

의안번호	제 19 호
의결연월일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제출자	사천시장
제출연월일	2004. 6. 18.

사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
----------	----

제 출 일 자 : 2004. 6. 18
제 출 자 : 사 천 시 장

1. 의결주문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가.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법 등 3대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앙부처·도 등과 연계한 혁신·분권·균형발전의 3대과제 추진 등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 나갈 선도조직인 「혁신분권담당」 신설하고,
- 나. 하수업무의 조직 이원화로 인한 공기업 운영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하수담당 + 환경시설사업소」를 통합하여 「하수도사업소」로 명칭을 변경, 「하수도공기업 운영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기능 및 운영체계에 맞게 분장 사무를 조정하며,
- 다. 시정의 현안 사업인 신청사 건립의 조속 추진과 진사외국인기업 전용단지와 서부경남첨단산업단지를 연계한 지역균형발전 등 신도시건설(행정타운 조성)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한시기구인 「행정타운사업소」를 신설하고, 사업소 위치 등 제반 사항과 현행 이 조례와 관련된 다른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혁신분권담당」 신설에 따른 기획담당관 분장사무 조정(안 제4조)
 - (1) 혁신 · 분권 · 균형발전 등 총괄 조정 업무 신설
- 나. 상하수도과 「하수담당」 + 「환경시설사업소」 ⇒ 「하수도사업소」 통합 운영함에 따른 상하수도과 명칭변경과 지역개발국장 업무 재 분장 (안 제7조)
 - (1) 하수담당 사업소 이관에 따른 상하수도과 명칭변경
 - 「상하수도과」 → 「수도과」로 명칭변경
 - (2) 하수분야 공기업 전환에 따른 하수업무 지역개발국장 분장사무 삭제
 - 하수도 공사 및 하수도 시설물의 보수 ·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삭제

- (3) 공기업 재무회계규칙 등 예산관리 효율화를 위해 하수공기업 관리자를 지역 개발국장으로 지정함에 따라 지역개발국장 분장업무 신설
 - 하수도공기업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

다. 신청사건립과 연계한 행정타운 조성을 위한 「사업소 신설」에 따른 명칭과 위치 규정(안 별표2)

(1) 신설 사업소

- 사업소명 : 「행정타운사업소」
- 위 치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424-2번지

(2) 사업소명칭 변경 : 「환경시설사업소」 → 「하수도사업소」

라. 「행정타운사업소」 및 「분권혁신담당」이 한시기구로 승인됨에 따라 존속기한 설정(안 부칙)

(1) 행정타운사업소 ⇒ 2006. 12. 31 까지

마.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와 관련된 다른 조례 개정(안 부칙)

- (1) 사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실 →담당관)
- (2) 사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사회복지담당주사 → 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4. 주요 토의과제 :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담당관실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해당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제2호 내지 제6호”를 “제3호 내지 제7호”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혁신·분권·균형발전업무 총괄·조정예 관한 사항

제7조제1항중 “상하수도과”를 “수도과”로 하고, 같은조제2항중 “제8호”를 삭제하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하수도공기업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

조례 제493호 사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한시기구) 제6조중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은 2004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제14조중 행정타운사업소의 존속기한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 2 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사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및 제3조제3항중 “실·국·과”를 “담당관·국·과”로 한다.

②사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중 “사회복지담당주사”를 “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로 한다

[별표 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4조 관련)

사업소명	위치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사천시 벌리동 331번지
종합사회복지관	사천시 벌리동 256-11번지
하수도사업소	사천시 사남면 방지리 200번지 진사지방산업단지 9-3블럭
문화예술회관	사천시 동림동 190번지
행정타운사업소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424-2번지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조(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시행정의 종합기획 <u>〈신 설〉</u></p> <p>2. 시정홍보 등 공보행정에 관한 사항</p> <p>3. 예산의 편성</p> <p>4. 감사 및 사정업무의 계획수립, 추진</p> <p>5. 조례·규칙의 제정, 개·폐의 심사 및 공포</p> <p>6. 각종 통계조사 업무에 관한 사항</p>	<p>제4조(기획담당관) ----- -----.</p> <p>1. (현행과 같음)</p> <p>2. <u>혁신·분권·균형발전 업무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u></p> <p>3. (현행 제2호와 같음)</p> <p>4. (현행 제3호와 같음)</p> <p>5. (현행 제4호와 같음)</p> <p>6. (현행 제5호와 같음)</p> <p>7. (현행 제6호와 같음)</p>
<p>제7조(지역개발국) ① 지역개발국에 지역경제과, 해양수산과, 도시건축과, 건설과, 도로교통과, <u>상하수도과</u>, 녹지공원과를 둔다.</p> <p>② 지역개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지역경제 및 기업육성에 관한 사항</p> <p>2. 수산자원조성 및 증양식사업 등 해양수산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p> <p>3. 도시계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p> <p>4.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p> <p>5. 지역개발 및 재난대비에 관한 사항</p> <p>6. 도로 및 교통에 관한 사항</p> <p>7. 상수도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p> <p>8. 하수도공사 및 하수도 시설물의 보수유지관리에 관한 사항</p> <p>9. 도시녹화 및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u>〈신 설〉</u></p>	<p>제7조 (지역개발국) ① ----- ----- ----- <u>수도과</u>, ----- -----.</p> <p>②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p> <p>4. (현행과 같음)</p> <p>5. (현행과 같음)</p> <p>6. (현행과 같음)</p> <p>7. (현행과 같음)</p> <p>8. <u>〈삭 제〉</u></p> <p>9. 도시녹화 및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p> <p>10. 하수도공기업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조례 제493호(2001. 12.19)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② (한시기구) 제6조중 주민자치과의 존속 기한은 200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p>	<p>조례 제493호(2001.12.19) 부칙 ① (현행과 같음) ② (한시기구) 제6조중 주민자치과의 존속 기한은 2004년 6월 30일 까지로 하고, 제14조중 행정타운사업소의 존속기한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p>

[개 정 전]

【별표 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4조관련)

사 업 소 명	위 치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사천시 벌리동 331번지
종합사회복지관	사천시 벌리동 256-11번지
환경시설사업소	사천시 사남면 방지리 200번지 진사지방산업단지 9-3블럭
문화예술회관	사천시 동림동 190번지

[개 정 후]

【별표 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4조관련)

사 업 소 명	위 치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사천시 벌리동 331번지
종합사회복지관	사천시 벌리동 256-11번지
<u>하수도사업소</u>	사천시 사남면 방지리 200번지 진사지방산업단지 9-3블럭
문화예술회관	사천시 동림동 190번지
<u>행정타운사업소</u>	<u>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424-2번지</u>

관 계 법 령 발 취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사업소의 설치)

- ①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로 한다. 다만, 일정기간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소는 한시적으로 설치한다.
1.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량등으로 보아 별도의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함이 효율적일 것
 2. 사업장의 위치상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 ②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사업소(법 제10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는 사업소 설치의 타당성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 1999.12.31>
-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0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범위 안에서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개정 1995.7.1, 1999.12.31>
1. 특별시 및 그 관할구역내의 자치구에 있어서 4급 또는 4급상당이하의 지방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2. 광역시·도 및 그 관할구역내의 시·군·자치구에 있어서 5급 또는 5급상당이하의 지방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2. 사업소설치운영에 관한지침(행정자치부 2001.12.29)

1.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보아 별도의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함이 효율적일 것
 - 업무수행의 기관 독립성 : 사업소의 소재지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와 같아서는 아니됨
 2. 사업장의 위치상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 업무 수행의 현장성 : 사업장의 위치상 현장에서 업무추진이 효율적일 경우 설치
- ⇒ 위 2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에만 설치

3. 사업소 신설에 따른 기구 및 정원 승인 (행정자치부 2004. 3.25)

- 기 구 : 1사업소
- 정 원 : 6명(5급1, 8급2, 9급2, 기능10급1)
- 시 행 : 조례규칙 공포일
- 존속기한 : 2006. 12. 31까지 (한시)